

## 리듬체조 단체경기 연합팀 참가규정

2019. 12. 26.

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협회 정관 제1장 제 2조 1항과 제4조 5항, 제7장 37조 1항에 근거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 결의에 의거 리듬체조의 저변을 확대하고, 소속이 달라도 연합팀으로 참가하여 리듬체조 단체경기가 운영됨으로써 단체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경기력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대회 적용)** 본 규정은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적용할 수 있고,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제3조(임무)** 단체경기 연합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리듬체조 경기위원회가 대회임무를 준수하고 본 규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

**제4조(참가규정)** 종전의 단일학교 소속의 선수로 참가를 제한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리듬체조 단체경기를 연합팀으로 구성하여 참가함으로써, 단체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기력을 향상과 저변확대를 위해 협회에 등록된 자만 참가할 수 있다.

1. 각 부문(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일반)별로 단일 학교팀과 타 학교 소속의 협회 등록 선수간의 연합팀 참여가 모두 가능하다.(단, 연합팀인 경우 선수들은 각 부문이 동일해야 한다.)
2. 연합팀인 경우 선수들은 실제 소속 시·도에 제한 받지 아니한다.
3. 참가팀의 명칭은 협회가 임의로 정하며 명칭 변경은 협회와 협의하여 추후 변경할 수 있다.(예 : 연합1팀, 연합2팀 등)
4. 대회 시기순 추첨은 협회가 팀의 명칭을 부여한 후, 연합팀은 단일팀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추첨한다.
5. 연합팀 규정이 시행되어 소속이 정해지면 당해 년도에는 그 소속을 유지해야 한다.(위반시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6. 대회 참가신청서는 협회 사무처에 제출한다.

**제5조(경기규정)** 본 규정 제4조 1항에 의거 학교 단일팀과 연합팀만 적용하여 출전할 수 있으며, 개인 출전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 단체경기의 인원은 로컬룰을 적용하여 5~6명으로 하고, 각 연기에는 5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단, 6명의 선수가 출전할 경우, 모든 선수는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연기에 참가하여야 한다. 위반시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2. 초등부와 중등부는 FIG 주니어 단체 프로그램 규정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는 FIG 시니어 프로그램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FIG 주니어, 시니어 프로그램 규정 별첨1,2)
3. 단체경기 시상은 제1경기 단체종합(2종목합산)과 제3경기 종목별 결승 경기(2개 종목)으로, 부문별로 총 3개씩의 금, 은, 동 메달을 수여한다.
4. 채점결과 최종점수가 동점인 경우, 같은 점수로 인정한다(동률인정)
5. 그 외 단체경기의 모든 규정은 FIG의 규정에 따른다(별첨3)

**제6조(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국제체조연맹(기술규정 8.4) 및 협회 경기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점수 발표 직 후 또는 2분 이내에 구두로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구두로 이의제기 이후 4분 이내에 서면(지정된 양식)으로 경기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의 신청시 공탁금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을 신청서와 납부(협회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 사항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탁금은 환불한다.
- ③ 이의 신청은 소속팀 코치에 의해 해당 소속 선수의 난도(D)점수에 한하여 가능하다.
- ④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결정된 내용은 소속팀에 통보하고, 경기장에 설치된 방송을 통해 공지한다.

**제7조( 규정 외 사항)** 단체경기(연합팀) 진행 중 상위 규정에 제외된 사항이 출현되면 현장에서 경기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처리한다.

## **부 칙 (2017.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